

간  
담  
회

공판중심주의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 \* 일 시 : 2005년 6월 9일(목) 오전 10시~1시
-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 공동주체 : 다시함께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간  
담  
회

공판중심주의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 공판중심주의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 \* 일 시 : 2005년 6월 9일(목) 오전 10시~1시
-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 공동주체 : 다시함께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목차

### 헌법소원법 개정소송법 개정안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 (1)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5p)
- (2)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의 여성폭력피해자인권 확보방안 - 사개추위(유인물 참고)
- (3) 피의자, 피고인 인권강화를 위한 형소법개정안이 피해자 인권에 미칠 영향 - 한국성폭력상담소(14p)
- (4)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 성매매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26p)
- (5)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 성매매대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35p)
- (6) 형사절차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익보호 방안 : 공판중심주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이호중(유인물 참고)
- (7) 형사소송법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53p)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1.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검사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수사 기록에 대한 실질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 공판준비절차의 도입  
집중심리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증거개시,쟁점정리, 입증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공판준비절차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중심리를 위하여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증거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 집중증거조사제도의 도입  
집중심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집중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연일개정 및 일괄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법률규정을 정비하고, 사건관계인에게 그러한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증거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현행 형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직접주의, 구두주의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증거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등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피고인은 형사절차에서 자신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신문제도, 법정구조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안이유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제198조, 제266조의3, 제266조의4, 제266조의11)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

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때에는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음

○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

○ 피고인 측도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증명,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주장을 한 때에는 검사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함

나. 공판준비절차의 도입(제266조의 2, 제266조의 5 내지 10, 제266조의 12 내지 15)

○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의 심리계획 수립과 피고인의 방어에 도움이 되도록 함

○ 법원은 심리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음

○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할 수 있음

○ 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때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공판준비기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

○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스스로 출석할 수 있음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각종 행위를 할 수 있음

○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할 때 쟁점 및 증거 정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함

○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쟁점정리 및 증거채부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를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도록 함

○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함

다. 증거조사절차 등의 개선(제54조, 제56조의2, 제150조의2, 제151조, 제221조의2, 제267조의2, 제275조의3, 제290조의2, 제292조, 제292조의 2 내지 4, 제294조, 제318조의5, 제323조)

○ 공판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함

○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개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의 날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함

○ 공개주의, 공판중심주의의 충실화를 위하여 구두변론주

의를 선언함

○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어느 때라도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하게 하거나 또는 녹음·녹화하도록 함

○ 증인 출석의 확보를 위하여 증인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증인신청인에게 있음을 명시함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반드시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기일을 통지하게 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증거조사의 순서를 검찰 측 증거, 피고인 측 증거, 직권조사 증거 순으로 규정함

○ 증거서류는 원칙적으로 낭독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내용고지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증거서류의 낭독은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이 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음

○ 증거신청은 원칙적으로 최초 증거조사기일 전까지만 하도록 하되,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증거신청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판결의 선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기일에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도록 함

라. 증거능력 규정의 개선(제244조, 제244조의2, 제307조, 제307조의2, 제311조 내지 제314조의2, 제316조, 제316조의2, 제316조의3, 제318조의 2 내지 4)

○ 헌법에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을 명시함

○ 피고인 아닌 자의 법관 앞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진술자를 대면하여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당해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자필 또는 서명날인이 있는 진술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원진술자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의 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증인이 정당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언거부의 대상이 된 진술이 기재된 서면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증언거부권 보장을 강화함

○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검사, 사법경찰관 등의 조사과정에 관한 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 조화를 꾀함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과 상반되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진술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하였음을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둠

○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안(제1안), 영상녹화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행해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하는 방안(제2안),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제3안)으로 나뉨

마.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제275조, 제283조의2, 제285조 내지 제287조의 2, 제289조, 제290조, 제296조의 2)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묵'과 '진술거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함

○ 개별적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처음부터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함

○ 진술거부권의 규정을 인정신문 앞으로 옮겨 인정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함

○ 검사의 공소장 낭독을 필수적 절차로 하여 재판의 시작

단계에서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함

○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하도록 하여 사건의 쟁점이 조기에 부각되도록 함

○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증거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사,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신문제도를 개선하여 증거조사 후 검사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인부터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함

○ 공판정의 좌석배치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석을 변호인석 옆으로 이동시킴

○ 피고인 신문 시 피고인 신문용 의자를 변호인석 옆으로 이동시킴

○ 피고인 신문 시 피고인 신문용 의자를 변호인석 옆으로 이동시킴

○ 피고인 신문 시 피고인 신문용 의자를 변호인석 옆으로 이동시킴

○ 피고인 신문 시 피고인 신문용 의자를 변호인석 옆으로 이동시킴

##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의 여성폭력피해자인권 확보방안

( 하태훈(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기획연구팀)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여성폭력피해자인권 확보를 위해 수사공판 참여자들의 참여의향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단계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피해자 권익보장을 위한 내용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수사공판 참여자들의 참여의향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단계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피해자 권익보장을 위한 내용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여성폭력피해자인권 확보를 위해 수사공판 참여자들의 참여의향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단계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피해자 권익보장을 위한 내용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여성폭력피해자인권 확보를 위해 수사공판 참여자들의 참여의향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단계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피해자 권익보장을 위한 내용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여성폭력피해자인권 확보를 위해 수사공판 참여자들의 참여의향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단계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피해자 권익보장을 위한 내용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여성폭력피해자인권 확보를 위해 수사공판 참여자들의 참여의향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단계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피해자 권익보장을 위한 내용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여성폭력피해자인권 확보를 위해 수사공판 참여자들의 참여의향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단계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피해자 권익보장을 위한 내용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 공판중심주의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성폭력 피해 생존자<sup>1)</sup>의 인권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 1. 머리말

“성폭력 피해 신고율 6.1%, 기소율 45%”<sup>2)</sup>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다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적 시선과 맞서, 이후 벌어질 수많은 불이익을 감내할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법적절차 진행 중인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소외감’을 호소한다.

성폭력범죄의 형사소송 진행과정상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 혹은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 될 만큼 빈번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2차 피해 양상은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그 절차상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호 등의 배려 부재나 반복진술 강요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절차적 권리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이다. 그

1) 이 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용어대신에 성폭력 피해 생존자(survivo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성폭력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피해여성들은 분노와 고통, 절망 속에서도 그 내면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용기와 힘을 갖고 있음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피해를 당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서 수사, 재판, 진료,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2』, 법무부(2004), 『법무부 여성통계』, 13쪽.

리고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신문들이 성폭력에 대한 이해 없이 이루어지는 데에서 비롯되는 “내용상 권리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여성인권단체들은 그동안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형사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의 내용상 권리 확보를 위해 수사·공판 담당자들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과, 절차적 권리확보를 위해 기존 특별법상의 피해자 권리보호 조항 강화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권익보장을 위한 내용 개선 등을 주요하게 제기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서는 2004년부터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을 발족하여 모니터링과 비판, 정책제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본 상담소도 지난 2004년 8월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범죄피해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점과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별도의 법보다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의견서를 통해 지적한바 있다.

이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본 상담소는 전반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과 피의자 인권이 보장되고 강화되는 방식으로 개정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방향이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배제하는 식이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 피고인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거론되는 절차가 실제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글에서는 사개추위의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성폭력사건의 수사·공판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와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제시를 함께 하였다. 의견 제시 내용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으나, 이번 개정이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게 가져올 직접적 영향에 관련된 부분이므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2. 공판중심주의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권리

### 1) 증거개시제도

#### (1) 피해자의 정보권 확보의 문제

현재로서는 피해생존자가 본인의 사건임에도 수사·재판의 진행상황, 가해자 측 주장의 쟁점 등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은 수사종결처분 고지 등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로의 변화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측의 부당한 공격 내지 책임전가식 변호에 대해 스스로의 이익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이전보다 더욱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중인 본인의 사건에 대한 수사·공판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피해자의 권리이다. 또한 공소취소, 공소장 변경 여부, 재판결과 등 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권도 확대되어야 한다.

#### (2) 검사와의 역할 중복 문제

피해자의 정보권 확보와 관련해 검사의 역할과 충돌, 중복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형식논리적인 차원보다는 실제 수사·재판에서의 피해자의 소외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실제 상담현장에서 보면, 가해자 측은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반면, 피해자 측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다를 뿐 만 아니라, 공판검사의 잦은 변경, 소극적인 공판활동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피해자가 겪는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소외 실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2) 공판준비절차

#### (1) 공판준비기일에의 피해자 소외문제

공판준비기일에 피해자는 방청을 통해 진행상황을 파악하게 되는데, 법원이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공판과정에서의 소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법원조직법(제57조 제3항)<sup>3)</sup>과 같이 예외적으로 재정을 허락하는 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방청을 허용할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증거조사절차

#### (1) 구두변론주의와 피해 생존자 치유의 관계

사개추위안에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참고인의 수사과정에서

3) 법원조직법 제57조 제3항: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부정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증인출석요구는 지금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경우, 반복진술과 공판정 출석에의 심리적 부담 등으로 피해로부터의 회복이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피해자 보호는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지만, 특별법이 갖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안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명시화가 필요하다.

## (2) 증인신청인에게 증인에 대한 출석노력을 부과,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시 과태료 강화의 문제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판중심주의의 현실적 실현을 위해 신청인에게 출석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증인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 형사소송에서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진 경우가 많았음을 볼 때, 이는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치들을 예외없이 적용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경우 반복진술에 대한 부담이 크며 이를 강요할 경우 또 다른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비디오진술 녹화를 의무화하고 증거능력의 특례를 인정하여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측에 의해 무분별하게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재판부가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여 증인채택을 하지 않거나,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넓게 인정하여 준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최근의 법원의 결정들을 볼 때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는 피해자의 부담과 고

통을 더욱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경우, 비디오 진술녹화본, 법정외 진술 등의 방법으로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실제진실발견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 생존자의 심리적 어려움이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현재 진술녹화제도와 증거보전절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

또한 증인신청인에게 증인에 대한 출석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피해자를 출석시켜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자 특히 어린이나 장애 피해의 경우 출석을 강요하는 가해자 측의 강제와 협박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증인 출석 문제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부정당한다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한 피해자는 공판에 출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증인 출석 문제와 증거능력 문제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형사절차를 통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전제 하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 증인출석자에 대한 절차상 보호조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폐쇄회로 카메라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확대해야 한다. 이 경우도 법관만 영상을 볼 수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 등 그 외 참여자는 음향만 청취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수사와 재판 대기 중에 타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독립된 공간에 머물 수 있는 등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도 요구된다.

#### 4) 증거능력 규정

##### (1) 피고인의 신문기회가 주어진 경우에 한해 증거로 인정하는 부분

[\* 사개추위 개정안 제311조 제2항 :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에게 진술자를 대면하여 신문할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현행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도 같다.”]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증언의 신빙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피고인의 보복, 위협 등으로 피고인과 대면한 상태에서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한데,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경우, 피해자 연령을 막론하고 가해자 대면으로 인한 심리적 공포감과 진술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97조는 분리신문을 인정하여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311조 제2항에 의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퇴정조치는 전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대면’의 의미에 성폭력특별법이 인정하고 있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이 포함되는지도 문제되는데, 실제적 진실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2) 피의자 아닌자의 진술조서를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만

#### 증거로 인정하는 부분

[\* 사개추위 개정안 제312조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위 조항에 의해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 이는 개정안 제318조의4에 의해 비디오진술녹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성폭력특별법 제21조의2에 의해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녹화증거의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도 현재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 성폭력 피해 생존자는 대부분 고소인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는 2번 이상의 진술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수사 개시로부터 공판에서의 증언까지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치유해가는 시기에 다시 한번 사건을 진술함으로써 그동안의 치유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비교적 조작가능성이 낮은 직접 증언에 의한 증거를 근거로 판단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증언 조작의 우려로 인해 오히려 실제적 진실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성폭력특별법상의 특례를 유지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거보전절차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비디오 진술 녹화의 절차를 엄격하게 하여 신빙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 (3) 피고인이 인정한 피고인 진술기재서류만 증거로 가능

[\* 사개추위 개정안 제313조 제2항: “전2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로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물적인 증거가 별로 없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만나 대화하거나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개정안에 의하면 이러한 녹음 역시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법적인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녹음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문제를 성폭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피고인 녹음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관련]

① 피해자 단독진술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개정안 제312조 제2항 관련).

현재 성폭력특별법에는 13세미만, 장애인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진술을 녹화하고,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반복진술을 최소화하여 피해자가 수사, 공판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모든 피해자에게 확대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인정절차 여부와 상관없이(현재로서는 증거로 인정되기 위한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가해자 측이 입회하

는 방식이어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 법원에서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피고인의 녹음 녹화본에 대한 규정은 피해자 진술녹화본도 근본적으로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경우도 피고인이 부정할 경우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녹화본의 경우도 가해자가 반대하면 활용될 수 없게 되어 피해자권리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② 대질신문 녹화본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피해자 진술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개정안 제312조 제2항 관련).

성인 피해 생존자의 경우 별도로 피해자 진술녹화없이 대질신문과정을 녹화하고, 이것으로 피해자 진술녹화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녹화물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피해자도 어렵게 한 진술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③ 성폭력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개정안 제313조 제2항 관련).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고소를 결심했을 때 ‘가해자와 통화하거나 가해자를 만나서 피해당시 상황에 대한 얘기를 유도하여 녹음하는 것’이 가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피해당시 증거확보가 어렵고(물적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고, 물적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당시 바로 고소를 염두해둔 증거확보를 해두기가 어려우며, 추후 고소를 결심한 이후에는 증거가 이미 소멸된 경우도 많다), 증인이 있

기도 어려운 성폭력피해의 특성상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정안에 의하면, 가해자가 이를 부정할 경우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 측의 '부정 남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수사·공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어렵게 마련된 증거들이 과연 얼마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가 수사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 5)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 피고인석을 변호인석 옆으로 이동시킬 경우

피고인의 무죄추정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석을 변호인석 옆으로 이동하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증언을 하는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자리배치가 피고인에 대한 공포감과 공판절차에서의 소외감을 배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 확보차원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가 피해자의 증언시 피해자 옆에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참석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 3. 맺음말

성폭력 범죄는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의할 때

처벌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범죄이다. 왜냐하면 성폭력 범죄는 그 특성상 물적인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거의 없고, 단지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자백이 증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게 되므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게는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상 겪었던 부당한 공격이-피해자불신, 책임추궁- 더욱 가중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적인 취지는 인정하나, 이로 인해 증인신문이 늘어나고 그 중요성도 높아지는 만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당사자의 의식개선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과 같은 증거능력 제한 조치나 징계의 강화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완이 없이는 현재 45%에 불과한 성폭력 사건의 기소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더욱이 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 성매매 피해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보호는 성폭력특별법과 같이 예외적인 조치로만 파악되었는데, 이제는 피고인의 인권과 함께 형사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과 같이 형사절차의 큰 틀을 개혁하는 시점에서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형사소송법의 또 다른 기본 이념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보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 성매매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정리단체 : 회원단체 새움터)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성매매여성들은 한 측면에서는 피해자로 보호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범죄자로 처벌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성매매여성들은 지속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업소의 착취나 강요에 의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불법행위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각종 채무이다.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알선범죄자들에 의해 화장품이나 홀복 등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곧 이 여성들이 평생 갚아야 하는 빚이 되어버린다. 포주에 의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카드 빚을 지기도 한다. 그 외에도 업소에서 강제로 마약이 투여된 여성들은 중독증상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마약매매나 투여로 처벌되기도 한다.

둘째, 성매매행위자로 분류되어 처벌되는 경우이다. 자발적인 여성이 되어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으면 입건되어 처벌된다.

셋째, 업소로부터 탈출한 성매매여성들을 찾아내어, 재인신매매를 시도하거나 선불금을 착취하려고 하는 성매매알선범죄자들에 의한 사기죄피소이다.

따라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은 피해자로 규정된 성매매여성들 뿐만 아니라 피의자(피고인)으로 규정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측면까지 고려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 1.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방안에 관한 의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의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사법개혁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취지에 공감한다.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규정된 성매매여성들은 형사소송의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성매매범죄의 불법수익을 비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망을 피해가는 성매매알선범죄자들에 비해, 성매매여성들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여성들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편견과 차별은 더욱 더 성매매여성들을 좌절시키곤 하였다. 특히, 알선범죄자(포주나 직업소개소)들이 성매매여성들을 사기죄나 절도죄, 무고죄 등의 죄명으로 고소한 경우 성매매여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곤 하였다.

포주들은 항상 많은 증거-대부분 조작된 증거들-와 증인-포주의 실제적 지배 상태에 놓여있는 성매매여성-들을 제시한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성매매여성들은 소지품조차 챙기지 못하고 업소를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고, 성매매업소에서 이루어진 범죄를 아는 포주나 소개업소와 성구매자, 동료여성들 중에서 자신의 편에서 증언을 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

려운 일이었다. 포주들이 제시한 증거들은 대부분이 조작된 것이어서 필체나 날짜 등에서 허점이 많았지만, 피고인으로서의 성매매여성들에게 충분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고 법정에서조차 증거들이 서류로 제시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증거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공판이전에 수사기록이나 각종 증거들에 대한 접근권 조차 거의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본 개정안의 기본적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단,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증거조사절차 등의 개선

◦ 형사소송의 과정에서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알선범죄자들에게 노출되어 위협을 당하거나 심지어 법정 앞에서 납치를 당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의 성매매여성들은 물론이고,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 법정에서의 보호조치 : 성매매여성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소인으로서의 포주나 알선업자들과 출입구를 달리하거나 서로 대면해야 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귀가를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 제266조의 3항(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 증인으로서의 성매매여성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과 등사는 제한되어야 한다.

- 제266조의 7항(공판준비기일) :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함으

로써 증인들이 본 사건과 그 외의 성매매알선범죄자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포주가 성매매여성들을 고소한 사건에서 포주와 피고인 모두 증인으로서 제시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매매여성들이다. 그러나 성매매여성들은 법정출석과정에서 알선범죄자들에게 노출될 위험 때문에 증언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상대방 측의 위협이나 협박 등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성매매여성들에게 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와 7일 이내의 감치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 성매매업소에서 어렵게 탈출한 여성들이 과태료를 마련할 길이 없어 또 다시 성매매업소로 유입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증인이 성매매폭력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서조항으로서 이러한 증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사생활보호 : 성매매여성들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여성이 피해자이건 피고인이건 상관없이 성매매와 관련된 모욕적인 내용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소송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생활과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

사회적 낙인에 의한 심리적 피해가 극심한 성매매여성들에게 이러한 법원의 무시와 모욕은 또 다시 큰 상처가 된다. 성매매 폭력피해 여성들에 대한 사생활보호에 대한 법원의 인식 개선과 이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구한다.

## 2) 증거능력 규정의 개선

• 형사소송법 제244조 개정에 관한 의견 : 기본적으로 공판중심주의에 동의하는 우리 단체들은 제244조 관련한 개정에 대해 제3안에 동의한다.

## 2. 형사소송법에 관한 그 외의 의견

본 개정안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그 외의 조항들도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상담원으로서 피고인인 성매매여성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상담원들에게 법원은 이러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조는 성매매알선범죄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수사기관에 접근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성매매여성들이 형사소송의 과정에서 차별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제95조(필요적 보석) : 중대한 인신매매나 성매매범죄자들은 형사소송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납치를 감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범죄양상을 잘 알고 있는 성매매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신고를 권유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제2의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따라서 중대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성매매, 인신매매 범죄자들은 조직범죄로 여러 조직과 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들뿐 아니라 가족을 협박하기도 하고, 주변인을 협박하기도 한다.

•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 성매매알선범죄자들에 의해 마약이 투여됨으로써 중독이 되어 결국 이로 인해 구속된 여성의 사례처럼, 성매매강요에 의해 벌어진 불법행위이고 그 여성에게 구속보다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시설에 이 여성에 대한 보호를 부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및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 업무상 비밀을 인정하는 직종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상담소와 시설의 상담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상담소에 와서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다가도 포주나 알선업자들의 협박이나 위협에 못이겨 진술이 바뀌게 될 경우 경찰은 상담원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도 한다. 이것은 상담원이 상담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밝혀야 하고 상담원의 신분 또한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 제165조(증인의 법정외 신문) : 법정에서의 증언과정에서

심각한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거나 이러한 위험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성매매여성들을 위해, 적극적인 법정외 신문이 실행되어야 하며, 성매매여성들이 법원에 이를 직접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 제181조(농아자의 통역) : 진술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장애여성이나 외국인여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법정에서 통역이나 전문가의 조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이 여성들을 상담하거나 진찰한 전문가의 증언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제224조(고소의 제한) : 성매매범죄의 특성상, 부모나 배우자가 직접 성매매여성들을 인신매매하기도 하고, 이들의 수입을 이용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친족이나 배우자에 대한 고소의 제한은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일 수 있다.

◦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현재 형량에 따른 공소시효의 운영은 모순이 많다. 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성매매사건에 대해 성구매자와 포주에 대한 공소시효는 각각 3년, 5년으로 차이가 있다. 공범의 성격이 강하고, 성매매여부에 대해 성구매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공소시효의 차이는 성매매여성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주나 인신매매범과 같은 중대한 범죄자들의 공소시효를 실제로는 3년으로 줄이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및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

력) : 2000년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가 일어날 당시까지도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사문화되어 있었고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전무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알선이나 포주의 행위들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연이은 화재참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새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성매매여성들도 자신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를 규명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이러한 여성들의 노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공소시효에 적합하게 고소하지 못한 것은 이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동안 성매매에 대한 방지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이 여성들을 이용해온 국가와 사회의 책임인 것이다. 이 여성들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하여 이들의 법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 사형제도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관련조항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 방향 제언>

결국 공판중심주의의 개정안의 기본취지와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조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대해 나가는 기본방향은 충분히 공감하고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남성중심적인 법, 재판관, 변호인조차도 성매매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이 상황에서 재판관과 배심원들은 얼마만큼 법정신을 제대로 살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인가

가 중요한 문제이다. 다른 보호 장치와 피해자보호법이 미흡한 상태, 심지어 법정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알선범죄자들이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 성매매여성들의 특성(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상황과 증거와 증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할 때, 여성 폭력 관련 범죄의 경우 남성 중심적이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럴 때만이 법이 우리 가까이에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생길 것이다.

##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 I. 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에 의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성매매피해여성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는 성매매(피해)자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소송이 공판중심주의,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신속한 재판이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정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아직도 성매매된 자를 폭력 피해자의 문제로 보지 않는 등 국민적 의식이 대단히 낮은 상황에서 사개추위 형사소송법개정안 중에서 성매매(피해)자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은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II. 성매매(피해)자와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와 차이점

- 4)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전국의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한 단체 20여개 소속)와 다시함께센터(서울시 위탁, 한소리회 운영주체)는 회의를 통해 강요, 강금 등을 포함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매매피해자는 물론 성매매행위자로 피소된 자를 모두 포함하여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여 본 의견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매매 강요 등을 한 업주를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재판으로 더 이상 성매매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면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매매가 불법이고 처벌까지 되어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으며, 선불금을 받고 갚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고인(피의자)의 입장인 때도 있게 되어 다른 피해자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 Ⅲ. 성매매(피해)자가 겪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의 상황

1. 성매매(피해)자가 업주로부터 성매매강요 등을 당하다가 용기를 내어 업소를 탈출하여 피해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경우

#### 가. 수사과정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관련 업소에서 업주의 성매매강요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가 용기를 내어 그 업소를 탈출하여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또는 혼자서 경찰이나 검찰에 업주의 성매매강요 등에 대해 고소를 하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요에 대한 좁은 해석으로, 끊임없는 성매매의 자발성에 대한 의심으로 성매매(피해)자가 고소한 업주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매매업소 집결지의 경우에

는 성매매알선의 정도로만, 산업형성매매인 룸싸롱 등에서는 성매매 강요나 알선 등을 하였다는 증거의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성매매의 자발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오히려 성매매(피해)자를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업주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에 성매매(피해)자는 검사에 의해 무고로 인지되거나 업주가 성매매(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주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장부 등을 압수하고 업소나 성구매자를 수색, 검거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사기관이 성매매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나 접대, 유착, 변호인 선임 등의 기타 이유들로 압수나 수색, 검거를 거의 행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당사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 업주는 자신의 성매매 알선이나 강요 사실에 대한 부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성매매(피해)자는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장부나 성구매자를 증거로 제시해야 하는데, 성구매자를 특정하기 힘들고, 특정한다 하여도 성구매자의 성매매 부인으로 성매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구매자와 성매매관련 업소의 업주를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인권침해상황 노출에서부터 성매매관련 업소 업주(업주 측 변호인 포함)나 성구매자들로부터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위협과 위기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가 다행히 장부 등을 기록하여 도주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증거로 제시했다 하더라도 장부를 임의로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부가 확실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거나 업주 측에 회유된 같은 업소의 다른 성매매여성에 의해 기록된 탄원서 등의 문서에 맞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는 일이 거의 모든 성매매(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 나. 재판과정

경찰이나 검찰에서 성매매(피해)자의 진술과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로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는 것 등이 밝혀져서 성매매피해사실이 인정되어 기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위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검사가 아닌 그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공판검사가 법정에 나와 있고, 업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성매매 강요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는 공판검사는 여태껏 수사한 검사가 아니고, 검사는 멀게만 느껴지고 성매매강요사실이 없다는 업주와 업주가 선임한 변호사에 의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피해자라 하지 않느냐 업주는 증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주었고, 증인도 성매매에 동의하여 한 것 아니냐? 자발적인 것 아니냐, 강요는 없었다.”는 등의 신문을 통해 다시 한 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더구나 성매매(피해)자는 비공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 신청을 하지 않거나 판사가 비공개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주가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재판보다는 성매매(피해)자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성매매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내게 되어 또 다른 낙인이 되는 것입니다.

#### 2.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

##### 가. 수사과정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관련 업소에서 업주의 성매매강요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가 용기를 내어 그 업소를 탈출한 성매매(피해)자는 업주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거나 다시 성매매를 강요당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전국을 떠돌게 됩니다.

그러면 업주들은 성매매(피해)자를 찾기 위해 또한 선불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하여 고소를 하게 됩니다.(고소내용에는 성매매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선불금이라든지 하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고 단지 대여금에 대한 사기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갚은 금액까지도 갚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기로 고소당한 성매매(피해)자는 어느새 기소증지가 되어 있고, 본인이 고소를 당한지도 모르고 생활하다가 경찰의 불심검문 등으로 기소증지 자임이 밝혀지고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48시간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매매(피해)자는 경찰관들에 의해 남의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도 없이 속여서 가져간 것이 되어 사기로 되며 경찰관의 의견서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다행히 성매매(피해)자의 말에 귀기울이는 경찰관을 만나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강요 등을 당한 사실과 오랫동안 일을 한 것이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 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일을 얼마하지 않은 성매매(피해)자는 사기의 혐의로 주거부정·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수사까지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매매자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을 거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기록을 토대로 조서가 작성되고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지게 되어 위와 같은 사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나. 재판과정

다행히 불구속으로 수사되고, 검찰에서 경하다고 보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고 정식재판청구권에 대해 인식도 없는 성매매(피해)자들은 확정된 벌금형을 내어야 하고, 위 벌금형을 내기 위해 다시 성매매업소로 유입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성매매(피해)자는 굳은 결심을 하여 성매매업소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벌금형으로 노역장유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수사까지 하여 죄가 중하다며 검찰에서 공판을 청구하면,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업주인 고소인의 진술조서까지 법원에 올려지게 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길도 찾지 못한 채 성매매(피해)자가 돈도 갚지 못하고 있으며, 업주와 합의도 안 된 상태, 또한 판사의

성매매에 대한 낮은 의식 등으로 법원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굳히게 되고,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참작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불우한 환경을 참작하여 단지 형을 조금 감경할 뿐입니다.

### 3. 성매매(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성매매(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성매매업소를 탈출하여도 사회에서 온전하게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과정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업주의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사기로 고소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도 편하게 살지 못합니다. 용기를 내어 피해사실에 대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증거가 없다고 하여 업주가 처벌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검찰에서나 법정에서나 성매매자로 낙인되어 또 다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업주로부터 무고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 4. 형사소송법개정에 대한 기대

개정되는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신속한 재판의 구현에 보다 부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성매매(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하에서는 사개추위의 2005.5.9.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방안(이하 '확립방안'이라고 합니다.)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IV.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한 개별적 검토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인이나 변호인 내용 부인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사개추위 개정안 제312조 제1항)

##### 가. 현장상담소가 바라본 검사의 피의자신문

검찰에서 인지되거나 고소되지 않은 경우(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검사(또는 검사 수사 지휘 하에 검찰주사)께서 경찰에서 조사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피의자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는 경찰에서 한 피의자신문을 정리하는 것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이미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해서 작성된 것을 피의자를 재소환해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것은 피의자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업무를 가중시켜 다른 중요사건에 대해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고 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경찰에서나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피의자조사 후 서명·날인을 하기 전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읽고 확인케 하지만, 피의자로서의 지위에서 오는 불안·두려움으로 인하여 제대로 읽고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나. 소결론

그러므로 경찰에서 인지 또는 고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경찰에서 검사의 지휘 하에 피의자조사를 하고, 검찰에서 인지 또는 고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보장 뿐만 아니라 검사의 업무효율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인이나 변호인 내용부인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사개추위 개정안 제312조 제1항)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 2. 피의자 신문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에 대하여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인이나 변호인 내용 부인시 증거 능력 부정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려

제 1항과 같이 피고인이 검사(또는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검사(또는 경찰)의 수사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 또 피의자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매매(피해)자와 같이 물증이나 서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 또한 중요한 사안에서 피의자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중요한 증거의 확보가 힘들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충할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나. 피의자신문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1) 제1안과 제3안의 문제점

제1안은 영상녹화물에 대해서도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보아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서면보다는 더 정확성이 담보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3안은 현행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성립의 진정 인정과 특신 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조작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 (2) 제2안의 타당성

제2안은 검찰에서 영상녹화물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는 동시에 영상녹화물의 보충적 증거사용으로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의 참여 등으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고 전 과정이 객관적으로 영상 녹화된 경우에만 한다고 하여 조작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배심원제도에 대비하여(시민의 화면에 의해 피고인에 유죄 예단 가능성)서도 고려되어지므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 (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의 활성화(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제10조 제3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성매매(피해)자 등을 조사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10조 3항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성매매 관련 채권이 무효인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사기관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상담원에게 신뢰 관계있는 자의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과 임의규정임을 내세워 본인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상담원의 동석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피해)자가 고소인의 신분이든 피의자의 신분이든 수사기관이나 성매매관련 업소의 업주, 성구매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상담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상담원의 동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매매(피해)자의 경우(사기 등으로 고소당해 피의자의 신분일 때)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드물고, 또한 선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에 있어서 동석을 하는 경우는 더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원의 동석의 활성화로 성매매(피해)자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영상물의 증거사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4) 영상녹화물의 외부유출의 엄격한 통제와 보존의 보안 필요성

영상녹화물이 보충적으로 증거사용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서류와는 달리 사람의 전체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에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성매매(피해)자가 고소인이든 피고인(피의자)이든 영상물을 통해 성매매(피해)사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얼굴·신체까지 영상녹화됨으로써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자 낙인의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영에 있어서도 비공개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위 영상녹화물이 복사되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고, 보존에 있어서도 보안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영상녹화물이 재판과정에 증거로 발현될 경우, 특별한 관리나 발현의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매매(피해)자의 인신

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판사만이 영상물을 볼 수 있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음성만을 듣는 방식을 도입한다거나 성매매(피해)자가 자신의 영상이 담긴 자료가 평생동안 남는 것에 대한 우려, 관리의 잘못으로 자신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영상녹화물의 전면적 시행시기도 유보되어야 합니다.

### 3. 피고인신문 및 증인의 출석·증언에 관하여

#### (1) 개정안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동조 제1항은 법원은 검사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접 신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침해 가능성

위 규정에 의하면 증거조사 후 검사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행 법상 피고인신문절차가 검사의 모두진술 (또는 피고인의 진술) 후 행해지고(신청불문), 그 후에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비해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많습니다.

피고인신문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 있을 수 있으며 피고인의 인권보장, 예단배제 등을 이유로 검사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 신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는 찬성합

니다. 그러나, 증거조사 후 피고인신문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성매매(피해)자는 법원에 나와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에 고통을 느끼게 되고, 또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일반인에게 노출될 가능성도 많으므로 피해자임에도 범죄자로 낙인되어 가는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록 법원에 의해 심리비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해 또 다른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고 더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신문보다 먼저 행해지고,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개정안 제 151조에 의해서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일 이내의 감치에도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3) 성매매(피해)자의 증인불출석의 정당한 사유 해석의 확장

성매매(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업주나 업주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할 수도 있고 피해사실을 또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성매매(피해)자라는 낙인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성매매(피해)자가 불출석하였다고 하여 소송비용의 부담과 고액의 과태료 또는 감치까지 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성매매(피해)자의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원에서 성매매(피해)자의 증인소환을 자제하거나 정당

한 사유를 넓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4)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강요 등을 한 업주인 피고인과 대면방지장치

성매매(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을 받아 출석을 해서 증언할 때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강요 등을 한 업주인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과는 다른 장소에 성매매(피해)자를 착석케 하고 편면거울(one way mirror)을 이용하거나 비디오등 중계장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4, 동조에 관한규칙 참조)에 의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5)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의 활성화(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사개추위 개정안 제275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측 편에 위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안에 의할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유리할지 모르나, 성매매(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때의 보호의 필요성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업주의 성매매강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성매매(피해)자가 다시 업주에게 노출되어 신문을 당하고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는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는 법원은 성매매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 있는 자

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뢰관계 있는 자(성매매피해상담소의 상담원등)의 동석의 활성화로 성매매(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 4. 검사제출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하여

##### 가. 검사제출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개정안 제266조의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나. 성매매(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한 성매매(피해)자의 검사제출서류의 열람·등사권 인정의 필요성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또는 변호인)의 대립구조에 의해 검사의 권한과 피고인의 권리가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성매매(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고 하여 고소를 제기한 후 수사 및 재판에 대해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성매매피해자)은 피고소인에 대해 수사 및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권리가 있고, 진실이 무엇인지 더 잘 아는 고소인(성매매피해자)이 수사나 재판에 협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라도 고소인(성매매피해자)이 단지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수사나 재판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고소인(성매매피해자)에게 검사제출서류의 열람·등사권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열람·등사신청인의 범위의 확대

위 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은 성매매(피해)자 본인,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뿐만 아니라 고소인인 성매매(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상담원에게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상담소의 상담원이 성매매(피해)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 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증언에 관하여

### 가. 개정안 제 316조(전문의 진술)의 주요내용

제 1항 피고인 아닌 자(피고인을 공소제기 이전에 피의자로 신문하였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그 신문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검사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내용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인될 것에 대한 보완으로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한 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성매매(피해)사실을 수사한 검사가 공판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

현재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다른 관계로 누구보다도 사건을 잘 아는 성매매(피해)사실을 수사한 검사가 성매매(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법정에서 나와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업무과중을 이유로, 수사의 효율성을 이유로 수사를 진행한 검사와 공판검사의 역할은 분담되어야 한다고 할 여지도 있으나 이는 검사의 수의 확대를 통해 해결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성매매(피해)사실을 수사한 검사가 공판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이 마련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법정에서 증인 출석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는 줄어들 것입니다.

## 6. 결어

이상과 같이 한소리회와 다시함께센터는 성매매(피해)자를 지원을 하면서 현장에서의 시각에서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고, 어느 때보다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깊이 형성되는 때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이에 맞추어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우리 사회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사회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보다 나은 형사사법절차로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져 모든 국민들이 존중받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절차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익보호 방안 : 공판중심주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이호중(한국외국어대)

##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現 行 條 文	改 正 案
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후 5일 이내에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② 차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은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차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u>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u> ④ <u>제3항의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해당 조서의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u>

現 行	改 正 案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① 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취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 속기록, 녹음대 또는 영상녹화대는 공판조서와는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 녹음대 또는 영상녹화대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現 行	改 正 案
<신 설> 제151조 (불출석과 과태료등) ① 소환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50조의2 (증인의 소환) ①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② 증인신청인은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제1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6조 제2항, 제5항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現 行 規 則	改 正 案
<p>제198조 (주의사항)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③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p> <p>④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3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1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98조 (주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p>

現 行 規 則	改 正 案
<p>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p>	<p>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④ 판사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삭제)</p>

現 行 案	改 正 案
<p>⑤ 판사는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p> <p>⑥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⑤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⑥ (삭제)</p>

現 行	改 正 案
<p>신설</p>	<p>제266조의2 (의견서의 제출)</p> <p>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만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② 법원은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p> <p>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고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li> <li>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술의 요지가 기재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li> <li>3. 제1호, 제2호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 등</li> <li>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예정하고 있는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 다만, 당해사건에 관한 서류 등에 한하지 아니한다.</li> </ol>